

건축선 변경 지정 고시

서대문구 고시 제2000-15호(2000.3.9.)로 지정된 서대문구 미관지구 내 건축선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(2018.4.19.)으로 미관지구가 폐지됨에 따라, 도로명을 기준으로 건축선을 변경·지정하여 가로변의 개방감 확보 및 보행자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「건축법」 제4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고 「건축법」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년 5월 1 일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



1. 건축선 지정 대상지역 및 고시내용

| 연번 | 도로명 | 구간 | | 비고 |
|----|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|
| | | 시점 | 종점 | |
| 1 | 통일로 | 홍은동 461 | 미근동 267 | 해당 도로(시·종점 구간에 한정한다)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「건축법」 제2조 제1항 11호에 따른 해당 도로의 경계선에서 3m 후퇴선을 건축선으로 한다. |
| | | 홍은동 산1-129 | 홍제동 산1-134 | |
| 2 | 연희로 | 홍은동 93-3 | 연희동 218-6 | |
| | | 홍은동 217-27 | 홍제동 334-166 | |
| | | 홍은동 424 | 창천동 510-1 | |
| 3 | 가좌로 | 홍은동 338-190 | 연희동 148-9 | |
| | | 홍은동 338-146 | 연희동 149 | |
| 4 | 수색로 | 북가좌동 460-1 | 남가좌동 152-57 | |
| | | 북가좌동 371-1 | 남가좌동 102-24 | |
| 5 | 성산로 | 연희동 375-4 | 신촌동 2-210 | |
| | | 연희동 446-324 | 신촌동 2-206 | |
| 6 | 사직로 | 현저동 산12-17 | 현저동 102-39 | |
| | | 현저동 산12-55 | 영천동 277 | |
| 7 | 연세로 | 창천동 83-58 | 창천동 30-9 | |
| | | 신촌동 116-61 | 창천동 18-42 | |
| 8 | 신촌로 | 창천동 515-4 | 충정로3가 35-25 | |
| 9 | 충정로 | 충정로3가 476 | 충정로2가 5-6 | |
| | | 충정로3가 368-2 | 충정로2가 201 | |
| 10 | 서소문로 | 충정로3가 368-2 | 미근동 267 | |

| | | | |
|----|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11 | 응암로 | 북가좌동 335-1 | 북가좌동 385-35 |
| | | 북가좌동 351-16 | 북가좌동 474-2 |
| 12 | 모래내로 | 남가좌동 102-3 | 홍은동 277-75 |
| | | 홍은동 277-170 | 홍은동 274-82 |
| 13 | 세검정로 | 홍은동 1-4 | 홍은동 452-18 |
| | | 홍은동 1-1 | 홍제동 217-27 |

2. 고시방법

가. 구보게재 및 인터넷홈페이지(<http://www.sdm.go.kr>) 고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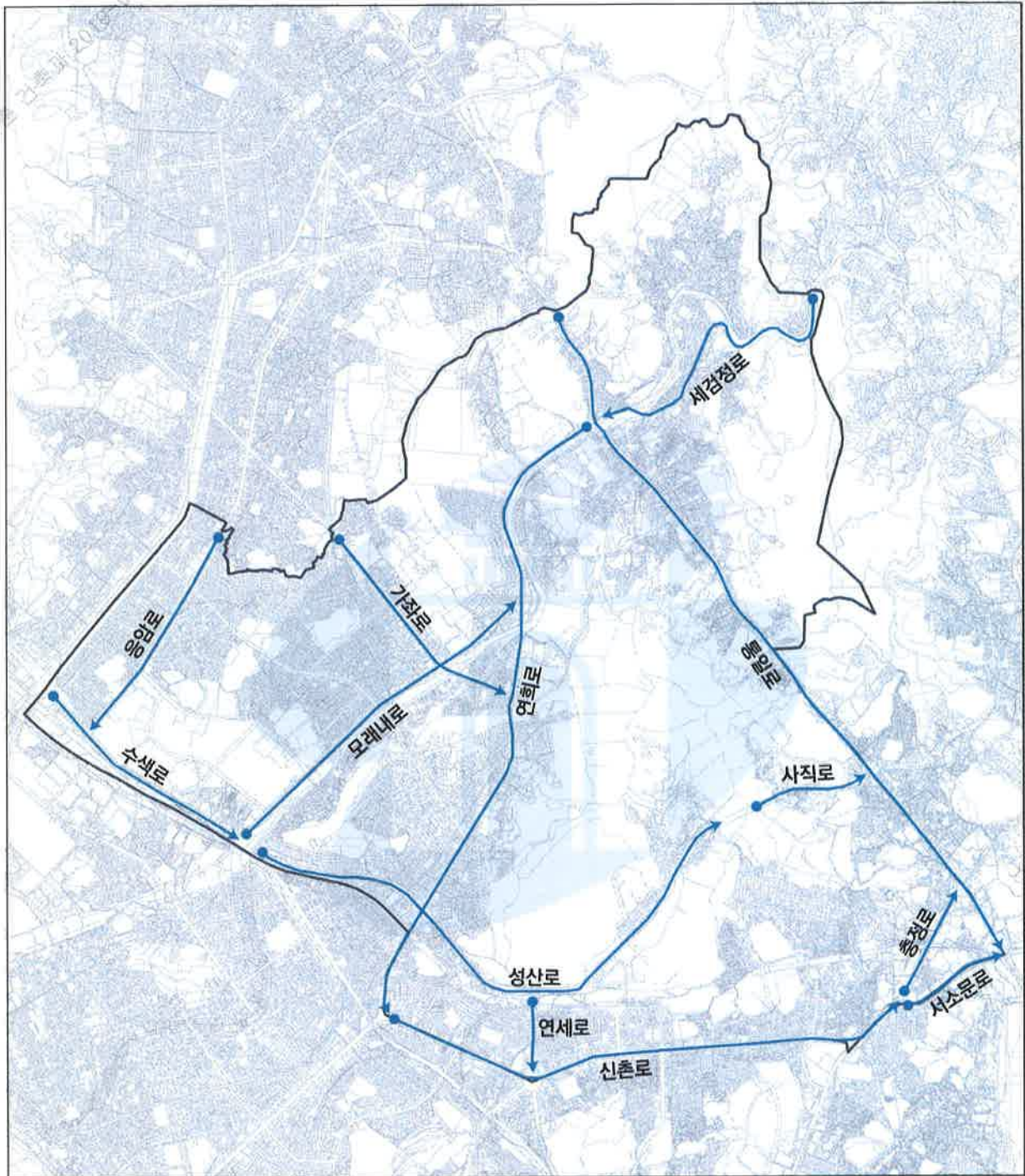
나. 구청·주민센터 게시판에 게재

3. 시행일시 : 고시일로부터 즉시

4. 기타사항 : 본 고시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대문구청 건축과(☎02-330-1390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붙임 : 건축선 지정대상 도로명 노선도 및 기존 미관지구 현황 각 1부.

[첨부1] 건축선 지정 대상 노선명(도로) - 기존 미관지구 도로변



[첨부2] 기존 미관지구 현황도

